

9. 임원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2. 25.

개정 2024. 07. 11.

제1조(설치근거) 강진군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라 임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이내
3.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사무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3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07.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계·법조계·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 회원종목단체,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 본회, 본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중앙 회원종목단체,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 본회, 본회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원의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임원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후보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원 후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협조 요구) 회원종목단체는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대상) 본회 「회원종목단체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심의절차) ①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다른 후보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규약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원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명시한 기준에 충족 한다면 임기의 중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종목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지대한 사람.
 2. 해당 종목단체의 발전에 후보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외 해당 종목에 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표는 [별표1]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 위원회는 별표의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재심요구) ① 제14조의 의결에 따라 중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요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목단체가 제출한 재심요구 취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2.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원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재정 기여도(25%)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출연금	A. 5백만원 이상 B. 3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C. 2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D.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E. 1백만원 미만	25	25	20	15	10	5

○ 평가영역 기준설정 : 해당 임원의 직전 임기동안 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원 출연금의 평균 재정 기여도 적용

적용 예

- ☞ ○○ 체육회 임원 재정기여도가 4년간 각각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으로 총 재정기여도가 400만원/4년= 100만원
- ☞ 임원재임기간 평균기여도 1백만원을 세부평가 영역에 적용 = **D : 10점 획득**

2. 재임 기간 내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 등급(15%)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포상 평가	A. 50점 이상 B. 35점 이상~55점 미만 C. 20점 이상~35점 미만 D. 5점 이상~20점 미만 E. 5점 미만	15	15	12	9	6	3

○ 평가지표 : 해당 임원의 직전 임기 동안 정부 및 체육단체장이 수여한 포상 점수

○ 포상 수여에 점수 적용표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점수	50	45	40	35	30
구분	광역단체장상	중앙단체장상	기초단체장상	시·도단체장상	종목/시군단체장상
점수	25	20	15	10	5

- 장관상 :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 중앙단체상 : 대한체육회장 · 국민생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표창
- 시·도단체장상 : 시 · 도체육(생활체육)회장 표창
- 종목/시군단체장상 : 시 · 도종목단체 및 시 · 군체육(생활체육)회장 표창
- * 시·군종목단체장 표창은 제외

3. 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이사회 참여율(10%)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이사회 참석율	A. 모두 참석 B. 2회 이하 불참 C. 4회 이하 불참 D. 6회 이하 불참 E. 7회 이하 불참	10	10	8	6	4	2

적용 예

☞ ○○ 체육회 임원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재임기간 중에 장관상 1회, 중앙단체장상 1회를 받았다면, 이때 점수는 30점+20점 = 50점
평가점수(B) : 12점 획득

○ 평가지표 : 해당 임원의 직전임기 동안 이사회 참석 점수

4. 평가내용 : 기타 공적 및 공헌도 등(50%)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공적 조서	○ 정성적 평가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50	50	40	30	20	10

○ 평가지표 : 공적 조서

○ 평가방법 : 공적 조서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기타 공적 사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